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략수출금융지원 업무의 근거 마련〉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297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전략수출금융지원 업무의 근거 마련(안 제18조제1항제6호, 제2항 제11호 및 제12호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한정애의원 등 15인

나. 발 의 일 : 2026. 1. 23.

다. 회 부 일 : 2026. 1.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략적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수출과 연계된 산업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신설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운영하게 됨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6호 신설).

III.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2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전략수출금융지원 업무의 근거 마련(안 제18조제1항제6호, 제2항제11호 및 제12호 신설)

현행	개정안
○ 업무(§18) ① 수출입은행의 자금 공급 분야 - (생략) (1~5호) - <신설> (6호) - (생략) (현행 6호) ② 수출입은행의 업무 - (생략) (1~9호) - <신설> - <신설> - (생략) (현행 10·11호)	○ 업무(§18) ① 수출입은행의 자금 공급 분야 - (현행과 같음) (1~5호) -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략수출의 지원 (6호) - (생략) (7호) ② 수출입은행의 업무 - (현행과 같음) (1~9호) -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른 전략수출기금의 관리·운용 및 자금지원 (10호) - 전략수출기금운용을 위한 자금의 출연 (11호) - (현행과 같음) (12·13호)

개정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162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한국수출입은행의 자금 공급 분야에 “전략수출의 지원” 분야를 추가하고, 전략수출기금의 관리·운용 및 자금지원, 전략수출기금운용을 위한 자금의 출연 업무를 명시하려는 것임.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방위산업·원전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대형·장기 수출사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현행 정책금융기관 중심의 수출금융 체계만으로는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

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략수출에 특화된 별도의 재원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임.

동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이를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② 기금의 용도를 전략수출 지원과 중소·중견 수출기업 지원으로 구분하며, ③ 기금 재원 조성을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을 발행하고 정부가 이를 보증하도록 하며, ④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을 부과하여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 등임.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구 분	주요내용
목적 및 정의 (안 제1장)	- 목적: 대규모, 장기, 신시장 등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하여 전략적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수출과 연계된 산업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정의: 수출, 전략수출, 수출산업생태계, 구매자금융, 국내정책금융기관, 수출산업협력에 대해 정의
전략수출금융 기금 (안 제2장)	- 기금의 목적: 수출금융 등을 통한 수출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수출산업생태계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 기금의 관리·운용주체: 한국수출입은행 - 기금의 계정: 수출금융지원계정(전략수출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 등)과 산업생태계지원계정(중소·중견 수출기업 지원)으로 구분 -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의 발행: 한국수출입은행은 지원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 - 자금지원: 한국수출입은행은 전략수출금융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지원 - 전략수출금융기금운용심의회: 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전략수출금융기금운용심의회 설치

구 분	주요내용
전략수출상생 기여금 (안 제3장)	-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의 산정, 감면 등: 구매자금융, 낙찰조건부 EDCF, 절충교역 등 지원과 결부되어 수출계약이 체결된 자는 지원 금액의 일정 비율을 전략수출상생기여금으로 납부 - 기여금의 납부: 기여금은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수출금융지원계정에 귀속되며, 그 중 일정 비율은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 전입
보칙 (안 제4장)	- 다른 법률의 적용제외: 산업생태계지원계정을 통해 출자한 회사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음 - 징계 등의 면책에 관한 특례: 한국수출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중과실 없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징계·문책 등을 면제 - 자금지원 등에 관한 특례: 자금지원에 따른 의결권 제한 주식 발행, 지명채권양도 대항요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
부칙	-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특례: 정부는 이 법 공포 시 지체없이 2026년도 전략수출금융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획이 심의·확정된 것으로 봄 - 전략수출상생기여금에 관한 적용례: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부터 적용 - 정부납부기술료에 관한 적용례: 정부납부기술료의 산업생태계지원 계정 귀속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징수분부터 적용 - 다른 법률의 개정: 정부납부기술료의 근거법률에 기술료의 산업생태계지원계정 귀속 근거를 규정

개정안의 내용은 위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안의 심사결과에 따라 개정안의 심사 방향을 함께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참고로,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심사과정에서는 ① 기존 전략수출 분야에 대한 지원정책과의 차별성 여부, ② 별도의 기금으로 설치할 실익 및 독립적인 기금재원 확보의 가능성, ③ 전략수출상생기여금 납부에 따른 역외보조금 논란 등 통상 분쟁의 우려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업무) ① 수출입은행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자금을 공급한다.	제18조(업무) ①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설></u>	6.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략수출의 지원
6. (생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수출입은행은 제1항 각 호의 분야에 따른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u><신설></u>	10.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이하 “전략수출금융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 및 자금지원
<u><신설></u>	11. 전략수출금융기금 운용을 위한 자금의 출연
10. · 11. (생략)	12. · 13. (현행 제10호 및 제11호와 같음)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문 의 처
02)6788-5148